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시복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76 발의년월일 : 2019. 9.

발의의원:이시복의원, 강성환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태원 의원 박갑상 의원, 이만규 의원 이진련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장상수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할 관내 교통수단, 여객시 설 및 도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 록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실정임
- O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7대 특·광역시 중 교통복지지표 종합평가는 63점(5위)에 불과하여 개선이 요 구됨
- 이동편의시설 관련 담당자 및 교통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날로 증가하는 교통약자의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함(안 제18조)

- 나. 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를 규정함(안 제19조)
- 다. 검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명시함(안 제21조)
- 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규정함(안 제22조)
- 바.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있음

다. 기 타 :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로 한다.

제6장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 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19조(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1명 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검사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③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1. 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 영리 법인
-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④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6장제2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7장(제22조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 제2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장 <u>보칙</u>	제6장 <u>이동편의시설에</u>
	대한 검사
<u><신 설></u>	제18조(이동편의시설의 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교통약
	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
	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
	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
	분하여 실시한다.
	1. 사전검사: 대상시설에 이동편
	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
	이나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
	에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
	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사
	2. 사후검사: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
	<u>사</u>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설계도
	면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신 설>

- 제19조(검사반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검사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1명이내의 검사요원을 임명하거나위촉하여 검사반을 구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검사반의 인원은 검사 대상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단, 검사반에는 장애인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한다.
 - 1. 관계 공무원
 -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검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으로 한다.
 - ③ 검사반은 검사를 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 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 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① 검사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 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 사 결과를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

<신 설>

<신 설>

- 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검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검사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 나 검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 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1조(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 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기술지 원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동 편의기술센터'라고 한다)을 설 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동편

제18조 · 제19조 (생 략)

<u>제20조</u> (생 략)

<신 설>

<신 설>

의시설 검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 다.

- 1. 검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
-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비영리 법인
- ③ 제2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이동편의시설 검사 업무의 의뢰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u>제24조</u>·<u>제25조</u>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u>제26조</u>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7장 보칙

제2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법 제17조의 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u><신 설></u>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23조(교육)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고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 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구광 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 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6. (생 략)
 -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8. (생략)
-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 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교통수단
 - 2. 여객시설
 - 3. 도로
-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제11조 관련)

1. 교통수단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바. 광역전철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2. 여객시설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 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 정한다)
-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 아. 광역전철의 역사

3. 도로

-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 물을 포함한다)
-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교통수단

이토퍼이지점			안내시설			내부	시설	그 밖의 시설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행선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직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 능 표 시	출입구 통로
	시내버스 (저상형)	0	0	0	0		0		0	0	
버스	시내버스 (일반형)	0	0	0	0		0		0	0	
	시내버스 (좌석형)	0	0	0	0		0			0	
	농어촌 버스	0	0	0	0		0		0	0	
	시외버스	0	0	0	0		0			0	
철.	도차량	0	0	0	0	0	0	0		0	0
도시철도차량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선박		0	0	0	0	0	0	0		0	0
광	역전철	0	0	0			0		0	0	0

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١	매개시설	1		١	내부시설	위생시설				
	보행	주 출	장애인				에스컬		장애인전용화장실		
대상시설	접근로	입구	전용주 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레이터	계단	대변기	소변 기	세면대
여객자동차 터미널	0	0	0	0	0	0	0	0	0	0	0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0	0	0	0	0	0	0	0	0	0	0
도시철도				\bigcirc							
역사				0							
환승시설	0	0	0	\bigcirc	0	0	0	0	0	0	0
공항시설	0	0	0	0	0	0	0	0	0	0	0
항만시설	0	0	0	\bigcirc	0	0	0	\circ	0	0	
광역전철 역사	0	0	0	0	0	0	0	0	0	0	0

이동편의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대상시설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시설	경보 및 파난 시설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개찰구	승강장	보안 검사장	여객 탑승교	대기 시설	임산부 휴게 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0	0	0	0	0	0		0				0	
버스정류장	0	0									0		
철도 역사	0	0	0	0	0	0	0	0				\circ	
도시철도 역사	0	0	0	0	0	0	0	0				0	
환승시설	0	0	0	0	0	0	0					\circ	
공항시설	0	0	0	0	0	0			0	0		\circ	
항만시설	0	0	0	0	0	0						\circ	
광역전철 역사	0	0	0	0	0	0	0	0				0	

3. 도로

아동편와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지하 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0	0	0	0	0
준용도로	준용도로 🔘		0	0	0